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**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**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의 제명과 내용이 개정('22.7.5) 됨에 따라 하위법령*에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

* 「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」

- 비상대비자원과 소관 예규(3종)* 용어 정리, 선발 조항 정비, 관련 제도 개선 등

* 동원자원 소요 심의규정,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규정,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등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제명변경

- 1)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제명을 변경

나. 용어정비(전문 일괄변경)

- 1)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에서 사용한 ‘주무부장관’을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‘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’으로 일괄 반영

다. 인력자원 정의 정비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

- 1) 해당조항이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나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연계 조항에 반영

라. 별지서식 내 근거법령 일괄정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”을 “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제1항 중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”을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2호”를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나목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”을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제2항 “주무부장관”을 “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, 제3항 중 “주무부장관”을 “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제2조제1항제2호”를 “제2조제1호나목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주무부장관”을 “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, 제4항 중 “주무부장관”을 “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별표,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, 별지 제5호서식, 별지 제6호서식, 별지 제7호서식, 별지 제8호서식, 별

지 제9호서식, 별지 제10호서식, 별지 제11호서식, 별지 제12호서식, 별지 제13호서식, 별지 제14호서식, 별지 제15호서식 중 “비상대비자원 관리법”을 각각 “비상대비에 관한 법률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행정안전부 소관 <u>비상대비자원 관리법</u> 시행규칙	행정안전부 소관 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</u> 시행규칙
제1조(목적) ① 이 규칙은 「 <u>비상대비 자원관리법</u> 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----- ----- -----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① ----- 「 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</u> 」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인력자원의 관리 직종) 「 <u>비상 대비자원 관리법</u> 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2호에 ----- 별표와 같다.	제2조(인력자원의 관리 직종) 「 <u>비상 대비에 관한 법률</u> 」 ----- ----- 제2조제1호나목에 ----- -----.
제5조(부족한 자원에 대한 조치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「 <u>비상대비자원 관리법</u>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-----고용노동부 장관 및 소관 <u>주무부장관</u> 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1호에 따른 ----- 소관 <u>주무부장관</u> 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	제5조(부족한 자원에 대한 조치) ① ----- 「 <u>비상대비에 관 한 법률</u> 시행령」 ----- ----- ----- <u>자원관리기관의 장</u> ----- -----. ② ----- ----- <u>자원관리기관의 장</u> ----- -----.
제6조(인력의 요청) ① <u>주무부장관</u> 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----- 요청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제6조(인력의 요청) ① <u>자원관리주관 기관의 장</u> 은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·도지사는 ----- 행정안전부장관과 <u>주무부장관</u>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주무부장관</u>에 대한 보고는 ----- 있다.	③ ----- ----- <u>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</u>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---, <u>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</u>----- -----.
제7조(인력자원의 조사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원은 법 <u>제2조제1항제2호</u>에 따른 인력자원으로 한다. 다만, ----- 제외한다. ④ (생략)	제7조(인력자원의 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제2조제1호나목</u>----- ----- . --, ----- ---. ④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통보)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<u>주무부장관</u>(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)은 ----- 통보하여야 한다.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.	제13조(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통보) ----- ----- ----- <u>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
제19조(인력훈련의 면제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-----, <u>주무부장관</u>은 ----- 통보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제19조(인력훈련의 면제) ① ----- -----, <u>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</u>은 ----- ---. ② (현행과 같음)

③ (생 략) ④ <u>주무부장관은 영 제22조제15호에 따라</u> ----- 밝혀야 한다.	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</u> ----- -----.
[별표] 인력자원 관리직종(제2조관련)	[별표] (현행과 같음), 법령 명칭 변경 (‘비상대비자원 관리법’ → ‘비상대비에 관한 법률’ 문구 수정
[별지 제1호서식] 소요 인력 요청서	[별지 제1호서식] (현행과 같음), 법령 명칭 변경(‘비상대비자원 관리법’ → ‘비상대비에 관한 법률’ 문구 수정
[별지 제2호서식] 인력자원 조사서	[별지 제2호서식] (현행과 같음), 법령 명칭 변경(‘비상대비자원 관리법’ → ‘비상대비에 관한 법률’ 문구 수정)
[별지 제3호서식] 인력자원 조사 결과 보고서	[별지 제4호서식] (현행과 같음), 법령 명칭 변경(‘비상대비자원 관리법’ → ‘비상대비에 관한 법률’ 문구 수정)
[별지 제4호서식] 물적자원 조사 결과 보고서	[별지 제4호서식] (현행과 같음), 법령 명칭 변경(‘비상대비자원 관리법’ → ‘비상대비에 관한 법률’ 문구 수정)
[별지 제5호서식] 인력자원 연명부	[별지 제5호서식] (현행과 같음), 법령 명칭 변경(‘비상대비자원 관리법’ → ‘비상대비에 관한 법률’ 문구 수정)
[별지 제6호서식] 자격·면허카드	[별지 제6호서식] (현행과 같음), 법령 명칭 변경(‘비상대비자원 관리법’ → ‘비상대비에 관한 법률’ 문구 수정)
[별지 제7호서식] 인력관리대상자 연명부	[별지 제7호서식] (현행과 같음), 법령 명칭 변경(‘비상대비자원 관리법’ → ‘비상대비에 관한 법률’ 문구 수정)

[별지 제8호서식] 인력관리대상자 통보서	[별지 제8호서식] (현행과 같음), 법령 명칭 변경(‘비상대비자원 관리법’ → ‘비상대비에 관한 법률’ 문구 수정)
[별지 제9호서식]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	[별지 제9호서식] (현행과 같음), 법령 명칭 변경(‘비상대비자원 관리법’ → ‘비상대비에 관한 법률’ 문구 수정)
[별지 제10호서식]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 통지서	[별지 제10호서식] (현행과 같음), 법령 명칭 변경(‘비상대비자원 관리법’ → ‘비상대비에 관한 법률’ 문구 수정)
[별지 제11호서식] 중점관리물자 제작 명령서	[별지 제11호서식] (현행과 같음), 법령 명칭 변경(‘비상대비자원 관리법’ → ‘비상대비에 관한 법률’ 문구 수정)
[별지 제12호서식] 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	[별지 제12호서식] (현행과 같음), 법령 명칭 변경(‘비상대비자원 관리법’ → ‘비상대비에 관한 법률’ 문구 수정)
[별지 제13호서식] 인력훈련 명령서	[별지 제13호서식] (현행과 같음), 법령 명칭 변경(‘비상대비자원 관리법’ → ‘비상대비에 관한 법률’ 문구 수정)
[별지 제14호서식] 실제훈련실시 결과 보고서	[별지 제14호서식] (현행과 같음), 법령 명칭 변경(‘비상대비자원 관리법’ → ‘비상대비에 관한 법률’ 문구 수정)
[별지 제15호서식] 도상훈련실시 결과 보고서	[별지 제15호서식] (현행과 같음), 법령 명칭 변경(‘비상대비자원 관리법’ → ‘비상대비에 관한 법률’ 문구 수정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	
연 락 처	(044) 205 - 4340